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광규택·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9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 괄	3
(1) 제정안의 입법취지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4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9
2. 조문별 검토의견	16
(1)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16
(2) 기본방향(제3조)	20
(3)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제4조)	21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및 제6조) ..	22
(5)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제7조)	26
(6)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1

(7)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36
(8) 영향지역 지원사업(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9
(9) 영향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44
(10) 추진단의 설립·운영(제18조)	48
(11) 지역기업의 우대 및 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제19조·제20조) ..	50
(12) 물이용부담금의 사용특례 및 원칙 등(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51
(13) 보칙(제24조부터 제27조)	54
(14) 별칙(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56
(15) 부칙(시행일)	57

※ 참고자료 58

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추진 경위	58
2. 안동댐 활용방안 사업추진 경위 ('22년 이후)	59
3. 낙동강 유역 수질사고이력 관련 세부사항	60

I. 제안경위

2025년 9월 4일 광규택·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5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IV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와 비교하면 수질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TOC 기준 IV등급 이하인 경우가 증가하고 조류의 번성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는 상황임.

이에 취수원수 다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내용

가.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

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안 제3장).

1) 영향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 설치

2) 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향지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부담하는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정비사업 시행

IV. 검토의견

1. 총 괄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기점으로 지난 30여 년간 수질 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영남권 지역 주민들은 식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취수원 다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영남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확보는 국민 건강과 물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제정안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장에 총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 낙동강유역 취수원다변화 사업 시행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등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제3장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은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재원, 영향지역 수질개선, 영향지역 정비사업과 재원, 추진단의 설립·운영, 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 보칙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특례 및 원칙, 물이용부담금의 지역 형평성, 보고·검사,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청문,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 벌칙에서는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세부 조문
총 칙	▪ 목적 (§1) ▪ 정의 (§2) ▪ 기본방향 (§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 다른 계획과의 관계 (§6)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행	▪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7) ▪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 (§9)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10)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1)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영향지역 지원사업 (§12) ▪ 영향지역 지원사업 재원 (§13) ▪ 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 (§14) ▪ 영향지역 수질개선 (§15) ▪ 영향지역 정비사업 (§16) ▪ 영향지역 정비사업 재원 (§17) ▪ 추진단의 설립·운영 (§18) ▪ 지역기업의 우대 (§19) ▪ 수해지역의 상생협력 노력 (§20)
보 칙	▪ 물이용부담금의 사용특례 및 원칙 등 (§21) ▪ 물이용부담금의 지역 형평성 (§22) ▪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23) ▪ 보고·검사 등 (§24) ▪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25) ▪ 청문 (§26) ▪ 권한의 위임 (§27)
벌 칙	▪ 벌칙 (§28) ▪ 양벌규정 (§29) ▪ 과태료 (§30)
부 칙	▪ 시행일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72호)이 2024년 9월 10일에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 제정안은 모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 및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와 내용이 대체적으로 유사함.

주요 차이점으로는 ① 윤재옥의원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규택·민홍철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윤재옥의원안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규택·민홍철의원안은 영향지역 지원사업 외에 ‘영향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영향지역 정비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소요재원 분담과 관련하여 윤재옥의원안은 ‘국가와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반면, 광규택·민홍철의원안은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비교]

윤재옥의원안 (의안번호 제2203872호)	곽규택·민홍철의원안 (의안번호 제2212696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목적(§1) ▪ 정의(§2) ▪ <u>적용범위(§3)</u> ▪ 기본방향(§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5) ▪ 다른 법률과의 관계(§6) ▪ 다른 계획과의 관계(§7)	▪ 목적(§1) ▪ 정의(§2) ▪ 기본방향(§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 ▪ 다른 법률과의 관계(§5) ▪ 다른 계획과의 관계(§6)
제2장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행	제2장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행
▪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8) ▪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9) ▪ 사업시행자(§10)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11)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12)	▪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7) ▪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8) ▪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9)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10)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11)
제3장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3장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13) ▪ <u>상생발전을 위한 지원(§14)</u> ▪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재원(§15) ▪ 추진단의 설립·운영(§16)	▪ 영향지역 지원사업(§12) ▪ 영향지역 지원사업 재원(§13) ▪ <u>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14)</u> ▪ <u>영향지역 수질개선(§15)</u> ▪ <u>영향지역 정비사업(§16)</u> ▪ <u>영향지역 정비사업 재원(§17)</u> ▪ 추진단의 설립·운영(§18) ▪ <u>지역기업의 우대(§19)</u> ▪ 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20)

윤재옥의원안 (의안번호 제2203872호)	곽규택·민홍철의원안 (의안번호 제2212696호)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 보고·검사 등 (§17) ▪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18) ▪ 청문 (§19) ▪ 권한의 위임 (§20)	▪ <u>물이용부담금의 사용특례 및 원칙 등 (§21)</u> ▪ <u>물이용부담금의 지역 형평성 (§22)</u> ▪ <u>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23)</u> ▪ 보고·검사 등 (§24) ▪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25) ▪ 청문 (§26) ▪ 권한의 위임 (§27)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 벌칙 (§21) ▪ 양벌규정 (§22) ▪ 과태료 (§23)	▪ 벌칙 (§28) ▪ 양벌규정 (§29) ▪ 과태료 (§30)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낙동강의 30여 년간 지속된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의결하는 등 어렵게 지역합의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지역 갈등, 이해관계자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상류 지역의 경우 2021년 합의한 해평취수장 이용안과 2024년에 마련한 안동댐 활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하류 지역의 경우 창녕·의령의 강변여과수와 합천의 복류수 등 90만톤을 개발해 부산, 창원, 김해 등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창녕·합천지역 농민의 지하수위 저하 우려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낙동강 상류 취수원 다변화 방안 노선도]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 방안 노선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재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음.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2002년부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되어 당초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여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 중 하나임¹⁾.

②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의 경우 군 공항의

1)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570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759호) 검토보고서 p.28

2) 국토교통위원회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홍준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4078호))

비행기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 민간공항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준비를 위한 것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 중 하나임.

③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대구광
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
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달빛철도 건설사업
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주체, 역세권 개발 등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입법례는 공항건설, 철도건설 등 개별사업에 있어 신속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음.

제정안의 경우 도수관 설치라는 큰 범주에서의 SOC 사업에 관한
법안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입법례는 항공 및 철도 분야라는 점에
서 일정한 차이가 있고, 개별 수도관 관련 사업에 대해 별도의 입법례
는 없으며, 제정안과 같이 개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향후 위와 같이 수도관 건설 등에 대한 법 제정 요구가 증가할 여지
가 있는 상황임.

그러나 낙동강은 다른 강보다 수질오염도가 높고³⁾, 본류 전체를 상

3) 2020년 수질(TOC, mg/L) : (낙동강, 물금) 4.4 (한강, 팔당댐) 2.2 (금강, 대청댐) 2.9 (영산강·섬진강, 주안댐) 2.2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⁴⁾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안을 입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지역과 수혜지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갈등이 원활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률안 제정시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취수로 인한 우려사항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수혜지역의 경우에는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재원 분담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영향지역 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⁵⁾에 영향지

4) 분류 의존율(%) : 부산 88, 경남 51(동부 82, 서부 0), 대구 66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에 대한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 근거 및 이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 기금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23.4. 개정, '23.10. 시행)되었다는 점과 동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2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최고 상위계획인 「물관리기본법」 제27조6)에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6)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동법 제28조7)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에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수도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임8).

둘째, 안 제7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부여가 「국가재정법」 체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022년 6월 동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용편익 분석이 1에 달하지 못하는 결과(B/C 0.78, AHP 0.556)가 도출된 바 있으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기획재정부는 취수시설은 다른 공익시설(발전소, 댐 등)에 비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에서도 「물관리기본법」을 따라야함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 체계를 바탕으로 두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을 수립·운영 중이므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라는 거시적 계획 하에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역상수도사업과 지위가 같아 법률 내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상위계획에 따라 추진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해 피해 정도가 적고 국고를 통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광역상수도 취수지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영향지역과 수혜지역 간의 합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영향지역 정비사업 관련 재원⁹⁾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제정안 제17조는 영향지역 정비사업 비용의 90%는 사업시행자(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10%는 영향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 유역의 수질오염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입법취지와 핵심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¹⁰⁾.

그런데 제정안은 입법목적 위주로 기술하고 있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법률의 주요내용인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조는 「수도법」 제3조(정의)에 기초하여 규정하되, 취수원 다변화 및 사업 관련 지역인 영향지역, 수혜지역 등 주요 용어를 신규로

10)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5., p.239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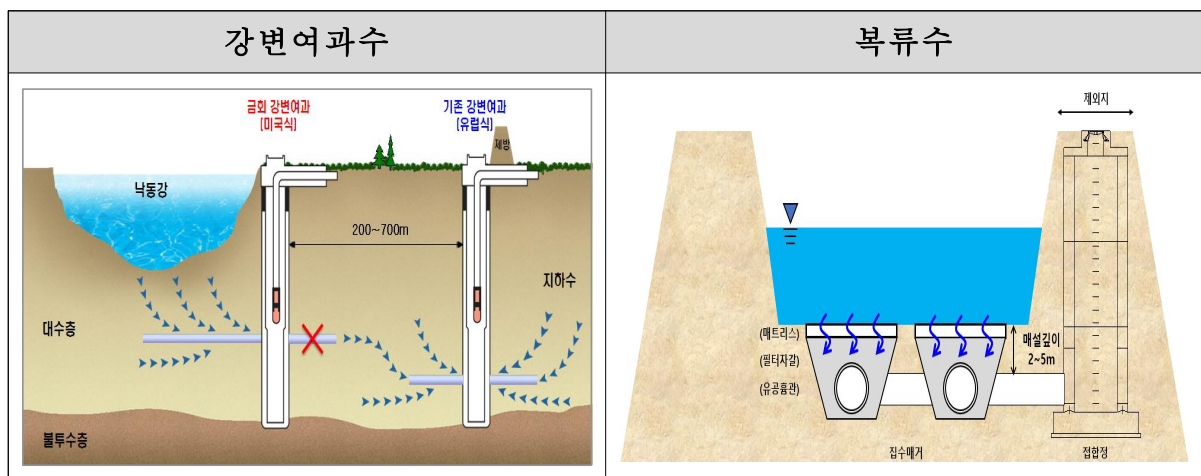
1. “원수(原水)”란 음용(飲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복류수(伏流水)”란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을 말한다.
6. “강변여과수”란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을 말한다.
7. “취수원 다변화”란 수질오염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취수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규로 설치되거나,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을 개발하여 취수원 또는 취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란 제7호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9. “영향지역”이란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등의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수혜지역”이란 영향지역으로부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통해 상수원을 공급받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수, 수도, 일반수도사업, 일반수도사업자, 복류수, 강변여과수, 취수원 다변화, 영향지역, 수혜지역 등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먼저, ‘취수원 다변화’는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취수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규로 설치하거나 강변여과수 또는 복류수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강변여과수’는 하천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 우물을 설치하여 여과수의 충적층 체류시간을 길게 하여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복류수’는 강변여과수와 달리 하상 굴착을 통해 집수매거(유공관)를 매설하여 취수하는 방식임.

[강변여과수와 복류수의 비교]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영향지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취수원 이전 시 기존 취수시설의 수량, 수질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취수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향지역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시설이 직접 설치되는 기여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지역 확대 시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기본방향(제3조)

안 제3조는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 및 먹는 물의 가치향상,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낙동강 유역 물 분쟁 해결 등 취수원 다변화 추진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 및 먹는 물의 가치 향상 2.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3. 먹는 물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물 이용 보장을 통한 낙동강 유역 물 분쟁 해결

다만,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영향지역의 경우 취수로 인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수혜지역은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역합의에 기반한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가 및 지방자치체의 책무(제4조)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가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영향지역은 취수로 인한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수혜지역은 영향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책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5조 및 제6조)

안 제5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수도법」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안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되,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않도록 하여 수도 분야 최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도법」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안 제5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특별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정안은 특정 지역과 대상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의 적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단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안 제6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 및 시·군 계획 등 다양한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위계 질서를 고려하여 수도 분야 최고 상위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 하에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뿐만 아니라, 항공 및 공항 분야¹¹⁾의 상위 계획인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고,

1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¹²⁾의 경우에도 국토종합계획,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다만,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도 국가 물관리 정책의 최고 상위계획인 「물관리기본법」 제27조¹³⁾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동법 제28조¹⁴⁾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

12)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13)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획 하에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임¹⁵⁾).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에서도 「물관리기본법」을 따라야함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 체계를 바탕으로 두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을 수립·운영 중이므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국가수도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라는 거시적 계획 하에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역상수도사업과 지위가 같아 법률 내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상위계획에 따라 추진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5)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제7조)

안 제7조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¹⁶⁾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제2항¹⁷⁾은 예비타

1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 ⑥ (생략)

17)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하거나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국민의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안전한 먹는 물을 유역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경제유발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낮아 사업 실시 여부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로 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서는 9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비용편익 분석결과

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 ⑤ (생략)

가 낮게 나올 경우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규정을 두어 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과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¹⁸⁾에 따른 절차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 간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⁹⁾.

또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있어서 개별 사업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이와 같은 개별 사업에 대한 법 제정

1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타 면제를 기재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기재부에서 수질사고 및 조류 대발생은 통상의 재난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낙동강 물문제는 장기간 지속된 바 코로나, 경제위기 등의 긴급상황이 아니며,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집행이 불확실하므로, 동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음.

요구가 증가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나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²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²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²²⁾,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²³⁾이 있음.

다음으로, ‘타당성재조사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성재조사²⁴⁾는

- 2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2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초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24) 「국가재정법」
-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나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과 타당성재조사의 특례나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특례 부여가 「국가재정법」 체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즉,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규정하기보다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경제적 유발효과 및 편익이 제한적이고 2022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도 비용편익 분석이 1에 달하지 못하는 결과(B/C 0.78, AHP 0.556)가 도출된 바 있어 장기화된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 ⑤ (생략)

(6)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등(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8조는 환경부장관이 수도 공급 여건,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수요 예측, 관로노선 및 취수시설 배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국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공공기관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10조는 사업시행자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8조(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수요 예측 3.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 기존 취수시설의 수질현황 분석 및 그 유역의 수질개선대책

제 정 안

5. 복류수·강변여과수 등 취수시설의 수질현황 분석 및 그 유역의 수질관리 대책
6. 복류수·강변여과수 등 취수시설 설치 예정지역 및 장애물
7.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개략적인 관로노선 및 취수시설 등의 배치계획
8.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9.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10.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11.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진 대책

13. 그 밖에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제9조(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 ①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

제 정 안

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자원의 개발사업으로 본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8조제3항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수도법」 제4조제4항²⁵⁾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을 통한 입법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부처 및 시·도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9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행자를 ‘국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법」²⁶⁾ 상 광역상수도 사업의 시행자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방

25)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6) 「수도법」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여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수립’이라는 문구는 ‘작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²⁷⁾.

넷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기본계획 수립 시 영향지역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실시계획 수립 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방법, 설계도서, 자금계획, 기간 등 실질적인 공사 실행의 계획을 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시하는 것이므로 공사 이후 수도시설 운영시 예상되는 피해 보상 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실시계획 수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각각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7)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안 제11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별 법률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려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각각 받지 않고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1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

제 정 안

른 도로점용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1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제12호의 「자연공원법」의 공원관리청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자연공원구역에서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항을 한정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자연공원법」 제23조²⁸⁾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만으로 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²⁹⁾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³⁰⁾에서도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

28)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9)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8.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8) 영향지역 지원사업(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안 제12조는 환경부장관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영향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영향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영향지역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과 소요재원 마련 등을 명확히 하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임.

제 정 안
제12조(영향지역 지원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향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영향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지역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향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영향지역 지원사업 재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향지역지원기금(이하 “지역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역지원기금의 재원은 제21조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다.

제 정 안

제14조(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물정책을 담당하는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
2. 대체상수원 지역의 시장·군수, 주민대표
3. 수혜지역의 수도사업자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③ 위원회의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발전과 동시에 발생했던 수질오염 물질의 유출·유입이 장기간 누적됨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로 영남권 주민들은 장기간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복지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는 영향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2조는 영향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 근거 및 이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 근거

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³¹⁾이 기 개정('23.4)되어 시행('23.10)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산시는 안 제12조의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지역 수용성 제고 및 갈등 예방을 위해 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향지역 지원사업은 「낙동강수

31)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21.6.)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 증액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영향지역 상생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신설 및 관련 절차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영향지역 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안 제13조는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4조는 이를 운용하기 위한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2)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운용과 중복되며,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 외의 별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33)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재정법」 제5조³⁴⁾는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3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3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4) 「국가재정법」

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³⁵⁾.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및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로 신설·운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35)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지역지원기금의 재원은 물이용부담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과 중복되어 양 기금에 안정적 재원조달이 곤란하고, 현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새로운 기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금 신설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설명임.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9) 영향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정비사업(제15조~제17조)

안 제15조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향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원은 물이용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등으로 하도록 하며,

안 제16조는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취수원 개발기간에 영향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17조는 지역정비사업 규모는 일일취수시설용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며, 영향지역 정비사업의 재원은 사업시행자가 90%,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가 1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향지역 주민의 피해 우려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낙동강 먹는 물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 정 안

제15조(영향지역 수질개선) ① 환경부장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영향지역의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시·도지사는 영향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의 종류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사업재원은 제21조에 의한 물이용부담

제 정 안

금 및 「물환경보전법」 제69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6조(영향지역 정비사업) ① 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취수원 개발기간에 영향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비사업(이하 “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9조의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와 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향지역 정비사업 재원) ① 제16조의 따른 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일취수시설용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취수량 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0만세제곱미터 미만: 200억원 이하
2. 취수량 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이하
3. 취수량 일 30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은 제9조의 사업시행자가 100분의 90을 부담하고,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가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제7조³⁶⁾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³⁷⁾은 상수원의 확

36)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7) 「수도법」 제78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수도법」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³⁸⁾에 따라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안 제15조는 신규 취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영향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할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수질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향지역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 신설이나 물이용 장애 등 주민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수도법 시행령」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3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취수원의 특성, 지형여건, 수질오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수질개선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수질 보호 효과를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향지역 주민의 동의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영향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취지임.

다만, 안 제17조는 영향지역 정비사업 재원의 90%는 사업시행자(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10%는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취수시설은 발전소, 댐 등 다른 공익시설에 비해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가 적고 피해범위 특징이 곤란하며 다른 광역상수도 취수지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영향지역과 수혜지역 간의 합의를 통해 영향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구미시는 취수시설 설치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영향지역 정비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시행자 또는 수혜지역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추진단의 설립·운영(제18조)

안 제18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 정 안
제18조(추진단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낙동강 상하류 유역 내 영향지역 및 수혜지역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대구, 부산,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관계부처(농림부, 국토부, 행안부 등)와 연계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상하류 유역의 농업영향을 점검

하고, 국토교통부와는 경로 확정 등 관로설치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와는 지방행정 지원업무에 있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³⁹⁾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⁴⁰⁾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1) 지역기업의 우대 및 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제19조·제20조)

안 제19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향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는 수혜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영향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시 영향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향지역과 수혜지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 정 안
제19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영향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수혜지역의 상생협력 노력) 수혜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는 영향지역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 대체상수원 지역의 농산물 구매,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이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제20조와 관련하여 영향지역과 수혜지역간 상호협력의 취지에 맞게 상생협력의 주체를 ‘수혜지역의 일반수도사업자’에서 ‘영향지역 및 수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상생협력하는 사업범위도 일부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물이용부담금의 사용특례 및 원칙 등(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21조는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22조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평균금액의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안 제23조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수질개선사업비용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 및 사용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임.

제 정 안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사용특례 및 원칙 등) ①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따라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사용용도 등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의한 영향지역지원사업과 제15조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영향지역지원사업에 30% 이상 분담하고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수계의 여건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이 낙동강 본류의 강변여과수 혹은 복류수인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물이용부담금의 지역 형평성)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의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제15조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낙동

제 정 안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되, 이 경우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평균금액의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① 환경부장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존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1조의 물이용부담금의 조정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3조의 지역지원기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1)은 낙동

4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강수계 지역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수질개선사업, 지역상생협력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금의 중복 운영 소지가 있으며,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부과율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 외의 별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3조제1항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지원
 -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13) 보칙(제24조부터 제27조)

안 제24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는 사업시행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26조는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도록 하고, 안 제27조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제 정 안
제24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제 정 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벌칙(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안 제28조는 환경부장관이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 제29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규정하며,

안 제30조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보고 및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²⁾.

제 정 안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42)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벌칙에서도 공사의 중지명령 등을 위반한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

(15) 부칙(시행일)

부칙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나 법집행기관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주지하고 하위법령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 6788-5548

의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참고자료

1.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련 추진 경위

- '91~ : 낙동강 유역 인근 산업단지 등으로부터 페놀('91, '08), 1-4 다이옥신('04, '09), 퍼클로레이트('06), 불산('12, '13), 과불화합물('18) 등 유출 사고 발생
- '21.06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의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 '22.06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B/C 0.78, AHP 0.556)

【상류(대구-경북)】

- '22.04 : 낙동강 상류 상생협정 체결(대구시·구미시·기후부·국조실·경북도·K-Water)
- '22.06 : 지방선거 후 대구·구미 단체장 변경, 대구-구미 갈등 재발
- '22.08 : 대구시의 상생협정 파기 통보 및 협정 체결 6개 기관 회담 등
- '22.11 : 대구시-안동시 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 '23.12 :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안동댐 활용안) 정부 추진 공식 요청
- '24.07 : 기후부, '안동댐 활용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수정안 마련
- '24.12~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상류 변경안 낙동강유역토 상정, 의견수렴, 이견多

【하류(부산-경남)】

- '22~'23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기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기후부)
 - * 취수지역 분산, 취수량 감축 등 주민우려 해소 대안(지하수위 저하 완화) 마련
- ~현재 : 취수 예정지(창녕·합천·의령) 주민 우려로 사업추진 지연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 안동댐 활용방안 사업추진 경위 ('22년 이후)

- ('22.4.4) '대구-구미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 체결
 - * (참석자) 국무총리, 기후부장관, 대구시장, 경북부지사, 구미시장, 수자원공사 사장
- ('22.6.30)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0.78, AHP 0.556)
- ('22.8.17) 대구시에서 구미시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상생협정 파기 통보
 - * 現 구미시장의 △현재 상생협정의 무효 주장, △합의된 방식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 ('22.8.18) 구미시에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건의
 - * '22.4월 상생발전 협정은 행정 절차 미이행, 구미시민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추진 등으로 수용 곤란, 타 시군과 상생할 수 있는 위치에 취수원 상류 이전 요구
- ('22.8.24) 대구시의 협정과기 통보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
 - * 기후부 주재로 기존 협정 유지 등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미-대구시의 입장 차이만 확인
 - ** (참석자) 기후부, 국무조정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수자원공사
- ('22.10.5) 대구-안동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 ('22.12.15)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 용역* 착수
 - * (기간/금액/수행) '22.12~' 23.12 / 9.3억원 / (주)다산건설턴트,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 ('23.11.28)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안)' 기후부에 공식 건의
 - * 맑은 물 하이웨이 용역보고서 ' 23.12.4일 제출
- ('24.1.30) 기후부, 낙동강 상류 안전한 먹는 물 구축 기술검토 연구용역 착수
 - * (기간/금액/개요) '24.1~' 7 / 0.97억원 /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기술-경제성 타당성 검토 등
- ('24.7.15) 기후부 장관-대구시장-안동시장 3자 간담회로 일 46만톤 취수량 합의 및 대외 사업 공식화
- ('24.12~)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변경안)' 상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3. 낙동강 유역 수질사고이력 관련 세부사항

□ 낙동강 유역 특수성

- 낙동강 유역은 타 수계와 달리 본류 전체를 상수원으로 이용하여, 본류 의존율이 高 (부산 88%, 대구 66%, 경남 51%)
- 유역을 중심으로 환경법체계 정립 이전부터 다수 국가산단이 구축되어 낙동강 본류로 오염원 유입이 장기간 발생
- 국내에 등록된 유통 화학물질 수는 32,910종*('22.)인데 반해 수질오염물질 종수는 60종
- * 1톤 초과 취급 화학물질 or 100kg 초과 취급 유해화학물질

☞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로부터 먹는 물 안전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취수원 확보가 절실**

□ 낙동강 유역 주요 수질사고 경과 및 조치

- ('91.3월) 페놀 유출사고

사고 개요	• (1차) 두산전자 구미공장 원료공급관 파열로 페놀 30톤 유출(3.16) • (2차) 부실 보수공사로 공급관 파열되어 페놀 1.3톤 유출(4.22)
피해 범위	• 수돗물 악취 민원 및 대구지역 식수공급 중단 • 밀양, 함안, 부산, 마산 등 영남 전지역 영향
사후 조치 사항	•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91.5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족('91.8월)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91.12월) • 「자연환경보전법」 제정('91.12월) • <맑은물공급 종합대책> 수정 수립('93.7월) • 낙동강 수질자동측정망 설치('95년~)

- ('94.1월) 수돗물 악취 발생사고

사고 개요	• 달성군 농공정수장, 양산시 물금정수장 2일간 심한 악취(원인 불명) -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인한 자정능력 저하, 연말연시 공장폐수 불법배출, 정수처리 미흡, 환경기초시설 부족 등(※하수처리율 32.5%)
피해 범위	• 발암성 물질인 벤젠, 톨루엔, 암모니아성 질소, 폐압연유 등에 오염된 수돗물 공급 (급수 중단 미조치) • 벤젠 0.0411mg/L, 톨루엔 0.1447mg/L (물금취수장)

사후 조치 사항	• '수질관리개선대책' 발표('94.1월) - 하수처리장 기초시설,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확충('96~'05, 약 27조 투입) • 부산, 울산, 마산, 대구 등 13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94~'97) • 환경부 발족('94.12월) - 건설부(상하수도), 보건사회부(음용수) 업무 환경부로 이관 • 음용수의 수질기준 개정('94.7월) -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수질기준 신설
-------------------------	---

○ ('94.6월) 디클로로메탄 오염사고

사고 개요	• 성서공단 폐유 유출(6.30) 및 대구인근 공단에서 유기용제 무단 방류 • 낙동강 전 수계 디클로로메탄 WHO 권고기준 크게 초과 검출
피해 범위	• 낙동강 수계 12개 정수장 취수 중단
사후 조치 사항	• 「먹는물관리법」 제정 및 먹는샘물 합법화('95.1월)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정('95.1월) - 기존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지

○ ('04.1월) 환경부 낙동강 수계 1,4-다이옥산 검출 발표

사고 개요	• 국립환경연구원 <수돗물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결과 발표('04.1월) - 낙동강 수계 정수장 11곳에서 1,4-다이옥산 검출 ※ 언론(MBC) 1,4-다이옥산 검출 보도('04.2월, 6월)
사후 조치 사항	• 낙동강본류(왜관철교)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04.9월) • 1,4-다이옥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04.12월) • 1,4-다이옥산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07.12월)

○ ('06.7월) 낙동강수계 취·정수장 퍼클로레이트 검출

사고 개요	• 환경부 낙동강 수계 및 취·정수장 조사결과 퍼클로레이트 검출 -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고농도 검출(최대 1,224μg/L) - 낙동강 수계 취·정수장 검출(최대 19μg/L)
사후 조치 사항	• 낙동강본류(왜관철교) 퍼클로레이트 가이드라인 설정('06.9월) • 퍼클로레이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10년 시행)

○ ('08.3월) 폐놀 유출사고

사고 개요	경북김천 코오롱유화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수에 의해 공정 중의 폐놀 일부가 김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
피해 범위	구미 광역취수장 및 고령군 다산취수장 취수중단
사후 조치 사항	- 환경부 폐놀 유입시 정수처리방법 지자체 통보('08.11월) - 실증플랜트를 이용한 폐놀제거 실험실시('08.7~10월)

○ ('09.1월)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사고 개요	- 낙동강본류(왜관철교) 1,4-다이옥산 측정치가 '04년 설정된 가이드라인 초과 - 강수량 급감 및 댐 저수량 부족으로 인한 하천유지수량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
사후 조치 사항	1,4-다이옥산 함유된 고농도 폐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낙동강수계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정밀점검 및 시설개선('09년~) 1,4-다이옥산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신규 지정('11년)

○ ('18.6월) 낙동강 수계 정수장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고 개요	- 환경부 조사결과 낙동강수계 정수장 '17년부터 검출수치 증가 확인 - ('12~'16년) 최고 6ng/L, ('17~'18) 최고 454ng/L
사후 조치 사항	- 구미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배출업체 원인 원료물질 미사용 조치('18.6월) - 과불화화합물 산업폐수 감시항목 신규 지정('18.7월) 과불화화합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18.8월)

○ ('20.5월) 양산 물금취수장 1,4-다이옥산 검출

사고 개요	- 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1,4-다이옥산 검출 - 폐수배출업체 고농도 1,4-다이옥산 배출
사후 조치 사항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및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적발, 폐수 방류 중단 조치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